

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3. 19) 상정
- 제13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3. 19) 수정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과장 조재형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평가 계획을 스스로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
-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이 제정(법률 제7928호, 2006. 3. 24. 공포, 2006. 4. 1. 시행)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자체평가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자체평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30인 이내의 실무 평가반을 구성·운영하도록 함.(안 제18조)

- 평가 위원회는 성과 관리와 자체 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, 자체 평가 대상 및 방법, 자체 평가의 활용과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조정하도록 함.(안 제19조)
- 위원장은 평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,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, 간사는 성과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함.
(안 제20조 내지 제22조)
-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도록 하고, 직무 소홀, 품위손상, 비밀누설 및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 하도록 함.
(안 제23조 및 제25조)
- 실무 평가반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성과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달성도 및 정성 평가 실시와 수시 평가에 참여하고,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.(안 제24조)
-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6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공무원들에 의한 자체 평가도 중요하나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.	○ 민간분야 전문가 참여를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겠음.
○ 위원회 위원수를 10인에서 11인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?	○ 위원회 의결 정족수 등을 고려 적극 검토하겠음.

<p>○ 자체 평가위원과 실무평가반의 차이는?</p> <p>○ 실무평가반의 구성은?</p>	<p>○ 자체 평가위원은 성과관리와 자체평가 기본방향, 대상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며, 실무 평가반은 연2회 정기적으로 달성도 및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함.</p> <p>○ 시분청 및 구, 동 직원 중 정책평가사 자격 보유 공무원과 희망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 구성 예정임.</p>
--	---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

- 안 제18조 제2항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당초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구성 하여야 의결정족수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위원회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,
- 안 제19조 1에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며,
- 안 제21조 평가위원회 정례회의를 당초 연 1회에서 연 2회 소집으로 수정 실무위원회 등에서 평가한 사항 등을 추인토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가 됨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5
의결 년월일	2007. 3. 22

제안년월일 : 2007. 3. 19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위원수를 확대 구성하고 심의·조정사항을 추가하며 정례회의 소집 횟수를 늘리도록 수정함.

2. 주요골자

-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.
(안 제18조 제2항)
-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추가토록 함.
(안 제19조의 1)
- 정례회의를 연 2회 소집토록 함.
(안 제21조 제1항)

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 제2항중 “10인 이내로”를 “11인 이내로” 한다.

안 제19조의 1 “성과관리와 자체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”을 “성과관리와
자체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의결”로 한다.

안 제21조 제1항 “연 1회”를 “연 2회” 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(자체평가위원회)</u> ① <u><신 설></u> ② <u>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</u> ③-⑥ <u><신 설></u>	<u>제18조(자체평가위원회)</u> ①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11인 이내로 ----- -----. ③-⑥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9조(기능)</u> 1. <u>성관관리와 자체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</u> 2-5 <u><신 설></u>	<u>제19조(기능)</u> 1. ----- ----- <u>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의결</u> 2-5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1조(회의) ①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여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</u> ② <u><신 설></u>	<u>제21조(회의) ①</u> ----- --- 연 2회----- ----- -----. ② (개정안과 같음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장기발전 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6장제22조를 제6장제31조로 하고, 제5장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제5장제28조 내지 제30조로 하며, 제4장제18조를 제4장제27조로 한다. 제4장에 제18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18조에 의거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, 환류를 통한 성과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,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③위원은 시의회 의원, 시소속공무원, 국내·외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무

평가반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⑥실무평가반은 시소속공무원 중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9조(기능)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성과관리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의결
2. 자체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자체평가실시 및 대상, 방법에 관한 사항
4. 자체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

제20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,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1조(회의) ①정례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2조(간사) ①평가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②간사는 평가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.

제2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2. 제25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
3.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24조(실무평가반) ①실무평가반원은 연 2회 성과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달성도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고, 필요시 수시평가에 참여하여야한다.

②실무평가반원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③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실무평가반원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, 반원구성을 정비하여야 한다.

제25조(비밀엄수) 평가위원회 위원 및 실무평가반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(일비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